

2010.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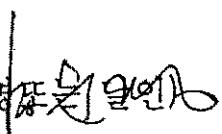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양순경 의원 (성명 양순경 날인 )

외부인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양순경	양순경	
조덕희	조덕희	
이정임	이정임	
노봉수	노봉수	
성명중	성명중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17
------	------

발의연월일 : 2010. 3. 9.
발 의 자 : 양순경 의원외 4인

1.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글자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10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관련정보제공, 비밀준수의무, 위원실비보상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내지 제15조)

3.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방 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게재, 관련부서 검토
- 기 간 : 2010. 2. 2.(화) ~ 2010. 2. 22.(월)(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4.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아동복지법」 제4조

붙 임 :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0. . . 조례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 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등 사법관련 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기관 유형 중 4개기관 유형이상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3장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등을 위하여 제천시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1.9] [법률 제9668호, 2009.5.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4.28>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6.13] [법률 제9110호, 2008.6.13, 일부개정]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전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8.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19] [법률 제9166호, 2008.12.19, 일부개정]

-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